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653 발의연월일: 2024. 10. 11.

발 의 자:윤건영・이기헌・전현희

이정문 • 박홍배 • 조인철

복기왕 • 이해식 • 강훈식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 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야별 교부 비율 등 소방안전교부 세의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수 있도록 분야별 교부 금액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소방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 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법률 제 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1항 전단 중 "소방안전교부세를"을 "소방안전교부세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교부 금액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단서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을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다.

- 1. 소방 분야: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이하 이 조에서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이라 한다)의 100 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2. 안전 분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 | ① |
| 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 |
|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 | |
| 화 등을 위하여 <u>소방안전교부</u> | 소방안전교부 |
| <u>세를</u>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 | 세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교 |
|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 <u>부 금액에 따라</u> |
|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 |
| 의견을 들어 <u>교부하여야 한다</u> . | 교부하되, 특별한 사유 |
| | 가 없으면 의견을 반영하여야 |
| | <u>한다</u> . |
| <u><신 설></u> | 1. 소방 분야: 「개별소비세 |
| | 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
| | 개별소비세 총액(이하 이 조 |
| | 에서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 |
| | 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
| | 해당하는 금액 |
| <u><신 설></u> | 2. 안전 분야: 담배 개별소비세 |
| |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
| | <u> </u> |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 | ② |
| 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 |
| 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 | |

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한다.

| , |
|--------------------|
| 담배 개별소비세 |
|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
| 부분 |
| |
| |
| |